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p>이 자료는 9월 9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8일(목) 12시]</p>			
배포일	2022년 9월 7일(수) (총 5쪽)	담당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김가영 팀 장 (043-880-5821) 이경준 대 리 (043-880-5826) 소방청 소방산업과 박진수 과 장 (044-205-7500) 조성욱 계 장 (044-205-7510)

소비지원 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 소화기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확인해야 -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소방청(청장 이홍교)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소화 성능·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리콜 정보]

- 휴대용 소화기, 사용 불가로 리콜('22.4.19., 중국 DPAC)
- 피아어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5.11.,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 라이안 유칭 방화테크놀러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5.11., 중국 DPAC)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 형식승인 없는 소형 소화기 온라인 판매차단 권고 및 불법 제품 단속 강화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 소비자들은 반드시 형식승인 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비자원 또는 소방청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화신고(080-900-3500) 및 온라인 신고(www.ciss.go.kr)
- [소방청] 소방청 민원센터 전화신고(1661-9119) 및 소방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붙임>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조사 결과

 <p>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	--

1 검토 배경

□ 최근 캠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손쉽게 휴대가 가능한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음.

-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형식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소화기의 온라인 판매가 확인됨)
- 중국 내에서 품질 문제 등으로 휴대용 소화기가 리콜된다는 위해정보가 다수 확인됨.

[중국 리콜 정보]

- 휴대용 소화기, 사용 불가로 리콜('22.4.19., 중국 DPAC)
- 안후이 피아어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국립표준화연구소)
- 라이안 유청 방화테크놀로지 휴대용 건조 분말 소화기 리콜('22.5.11., 중국 DPAC)

○ 국내 언론에도 중국산 소화기의 안전성 관련 문제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음.

[국내 언론보도]

- ‘중국산이 국산으로’ 분말소화기 원산지표시 위반 85만대 적발('21.5.31., 뉴스시스)
- 혹시 내것도?... 불 못 끄는 중국산 불량 소화기 6천대 시중 유통('19.8.22., 매일경제)
- 불량·가짜 중국산 소방제품 ‘위험천만’ ('19.3.19., KBS)

□ 이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 관련 심층조사를 실시함.

2 관련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따라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1) 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대행 소화기’로 검색할 경우 약 33,677개 검색 ('22.5.3. 기준)

□ 성능검사 및 KC인증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부품 등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동 규칙 별표 11(제품검사 합격표시)에 따라 소화기 표면에 제품검사 및 합격 여부를 KC인증마크로 표시하게 되어있음.

□ 기술기준에 따른 외형, 표시사항 등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13조(소화기의 패키징)에 따라 소화기의 결합 부분에 사용하는 패키징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동 기준 제 38조(표시)에 따라 소화기 본체용기에 제품 종류와 형식, 형식승인번호, 제조연월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KC인증마크, 제품 종류와 형식승인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 판매 불가

3 조사 결과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kg미만 소형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함.

- (적합성) 육안으로 확인 시 패키징량으로 ‘소화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표시사항) 구매한 15개 제품 모두 형식승인번호·KC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품의 종류·형식, 소화약제 성분, 사용 가능한 화재 종류, 제조연월일 등이 외국어(중국어*)로 표시됨.

* 대부분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는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유입됨.

[구매대행 소방용품 예시]

분말 소화기		기타 소방용품 ²⁾
패키징불량 ¹⁾	구매대행 소화기 표시	
		

1) 손잡이 하단의 황동 밸브와 용기 접합 부분의 고무 패키징이 외부로 노출(기술기준에는 패키징의 외부 노출 금지)
 2) 국내 소화기 및 소화용품 기준에 없는 제품(차량 엔진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

4

소비자 주의사항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구매한 경우,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 자가사용 및 연구목적으로 소화기를 구매대행 하는 경우라도 **화재진압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 시 매우 중요한 도구로써 **반드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구매·사용**하셔야 합니다.
 - 형식승인 획득 여부는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 표시된 언어*** 등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 * 국내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음.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확인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방청 등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전화신고(080-900-3500) 및 온라인 신고(www.ciss.go.kr)
- [소방청] 소방청 민원센터 전화신고(1661-9119) 및 소방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올바른 소화기 표시사항



* 출처 : 소방청